

#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

## 일부개정법률안

(박정 의원 대표발의)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특별법 시행일부터 7년간에서, 특별법 시행일부터 12년간으로 ‘5년’ 연장함  
(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).

### 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은 정)